

양주옥정 A8BL · 양주옥정 A16BL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05.04.]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9.09.27.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모집은 입주자격완화(소득 150% 완화, 공고문 4P 참고) 공고입니다.
- 수급자가 아닌 청년 등도 신청 가능합니다.
- 영구임대주택은 LH가 아닌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양주시 관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양주시 거주자가 아닐 경우 가까운 양주시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일원 영구임대주택

- 양주옥정 A8BL :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258(옥정동 1032) 영구임대주택 옥정8단지
- 양주옥정 A16BL : 경기도 양주시 회천남로 115(옥정동 1047) 영구임대주택 옥정16단지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단지	주택형	건설호수	세대별 계약면적(m ²)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최초입주	모집할 예비자	
			전용	주거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일반	주거약자
					기타공용	주차장						
A8BL (양주옥정8)	23B (주거약자)	168	23.89	14.1297	1.1621	6.4818	45.6636	801	철근 콘크리트/ 지역난방	'17.06	-	35
A16BL (양주옥정16)	24A	100	24.86	13.8434	1.0711	6.8439	46.6184	1605			25	-
	24B (주거약자)	134	24.96	13.8991	1.0754	6.8714	46.8059				25	

- ※ 위 단지는 국민임대(A8 1,206호 / A16 1,384호)와 영구임대(A8 344호 / A16 234호) 혼합단지입니다.
- ※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주거약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주거약자의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임)
- ※ **주택형별(주거약자용, 일반공급) 중복신청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모집 호수는 향후 기 계약자의 해약, 주택보수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자로 선정될 경우, 공사 발생시 예비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대상자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임대조건

단지	공급 형별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5%)	잔금(95%)					
A8BL (양주 옥정8)	23B (주거약자용)	「가」군	(+)	2,469,000	123,400	2,345,600	49,190	3,000,000	5,469,000	34,190
			(-)					1,000,000	1,469,000	52,100
		「나」군	(+)	15,135,000	756,700	14,378,300	106,530	12,000,000	27,135,000	46,530
			(-)					11,000,000	4,135,000	138,610
A16BL (양주 옥정16)	24A	「가」군	(+)	2,569,000	128,400	2,440,600	51,180	3,000,000	5,569,000	33,680
			(-)					1,000,000	1,569,000	54,090
		「나」군	(+)	16,850,000	842,500	16,007,500	109,740	11,000,000	27,850,000	45,570
			(-)					13,000,000	3,850,000	147,650
	24B (주거약자용)	「가」군	(+)	2,580,000	129,000	2,451,000	51,390	3,000,000	5,580,000	33,890
			(-)					1,000,000	1,580,000	54,300
		「나」군	(+)	16,918,000	845,900	16,072,100	110,190	11,000,000	27,918,000	46,020
			(-)					13,000,000	29,918,000	148,10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위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5.0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 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균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1.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			
	< 월평균 소득 >			
		일반조건		자격완화조건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50%
	1인	2,669,354	3,432,027	5,720,045
	2인	3,531,762	4,693,016	8,799,405
	3인	4,084,215	5,717,900	12,252,644
	4인	4,401,101	6,161,541	13,203,303
5인	4,663,493	6,528,890	13,990,478	
6인	4,953,132	6,934,384	14,859,395	
7인	5,242,771	7,339,879	15,728,312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4,500)만원 이하			
	2.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해 허용하되(소득 이외 다른 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소득 초과 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 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추가 1회 재계약 허용합니다.
 -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호에 따른 본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 자산	<p>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p>자동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p>금융 자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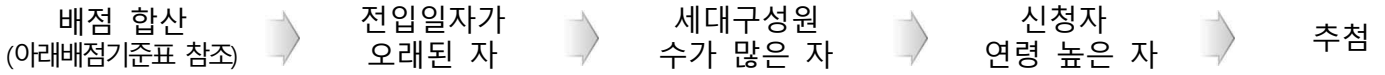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4-1.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공급 자격 해당 여부, 배점적용은 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배점기준표

구 분		배 점	배점기준
1. 당해주택 건설지역(양주시) 거주기간 (20점)	1년 미만	12	양주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14	
	5~10년 미만	16	
	10~15년 미만	18	
	15년 이상	20	
2. 신청자 연령 (20점)	40세 미만	14	공고일 현재 기준
	40~50세 미만	16	
	50~60세 미만	18	
	60세 이상	20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 본인 포함) (20점)	1~2인	14	무주택세대구성원 범위와 동일
	3인	16	
	4인	18	
	5인 이상	20	
4. 가점 (10~20점) ※ 신청자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유형 3가지 이상 해당)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18 (유형 2가지 해당)	
		16 (유형 1가지 해당)	
		10	
	비수급자	10 (유형 하나 이상 해당)	▶ 비수급자 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4-2. 주거약자용주택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대상자)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완화모집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완화모집 입주자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종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 영구임대주택 예비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의 공급계약이 가능 합니다.

■ 경쟁 시 입주자선정 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모집공고일 기준)

구분		배점
1. 당해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10년이상	5
	5년이상 ~ 10년미만	3
	1년이상 ~ 5년미만	2
2. 공급신청자 나이	75세이상	3
	70세이상 ~ 75세미만	2
	65세이상 ~ 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본인 포함)	2인 이상	2
	1인	1
4.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5.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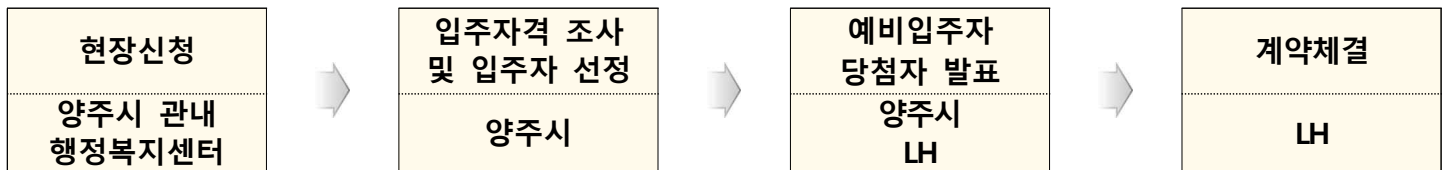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양주시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

신청기간	신청장소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
'26.05.19(화) ~ '26.05.22(금) (10:00~17:00)	양주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6.09.02(수) 17:00 이후 양주시 홈페이지, LH청약플러스

- 신청접수는 양주시 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하며, 신청기간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는 자격검증 기간 등 소요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동시 LH청약플러스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청약플러스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내사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6.05.04.)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공통 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주시 관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출대상) 전체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확인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인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 1통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또는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사본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출생 또는 입양자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1통

대상자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p>※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양주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양주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각 1통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공급자격, 배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가산 적용 등을 위해 태아 또는 입양자를 세대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출생증명서	• 공급자격 및 배점부여 등을 위해 자녀를 둔 사실을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기타서류	<p>< 해당자만 제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주민등록표등본	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신청자격 및 배점 증명서 (해당자 제출 필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 등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서	보훈(지)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12.7.1이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확인서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확인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행정복지센터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 신혼부부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및 세대구성 확인서 ·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 (입주 시 제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내공사양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행정복지센터
소년소녀가정	소년소녀가정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태아를 세대구성원, 미성년자녀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진단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자	-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초본 -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표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임대조건 「가」군 해당자 중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①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국가유공자 등의 증빙서류 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사회보장급여통지서에 첨부된 "소득인정액 산정결과") (※ 신청 후 수령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므로, 사전에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현장접수 당일 또는 서류제출 기간 중 제출 불가한 경우 인정 불가함)	보훈(지)청 행정복지센터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2026.09.02.(수)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LH청약플러스 및 ARS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PC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상단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명단
 - ARS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주소변경 방법 :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개인정보변경) 또는 공사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가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공급형별로 대기중인 예비자 및 공가호수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추후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8. 무주택 확인 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사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u>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u>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갱신계약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에 따른 소득요건 완화모집으로 입주한 경우 소득기준(150%) 초과 시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하고, 2회 초과 시 예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임대조건 할증 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세부 적용기준은 일부 변동가능하며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초과에 따른 할증비율이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 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중복입주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공급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 간주되어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 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 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542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차량의 개별 소유지분과는 무관함
단지여건 (옥정8)	<p>■ 지구 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극동건설(주), 동일건설(주), (주)태창토건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사업지구 북측에 있는 에너지공급시설로 인한 소음, 수증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p>■ 단지 외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교육시설(유치원)이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통행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구분	유의사항
	<p>■ 단지 내부여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 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주동분리형이며 단지 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가구, 붙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및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단지 여건 (옥정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대방건설입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 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완충녹지 등) 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및 법면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서측에는 초·중학교가 있고,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계획되어 있어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임.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에어매트 설치구간은 잔디 외의 식재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저층부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문양은 현장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내부 시설물(운동기구 및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재활용품 보관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등이 일부동의 전후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별, 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음. • 전기실 근접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층 세대는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배치상 단지 외 도로와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구분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서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주차장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의 일부 구간에서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하절기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 되지 않는 주동분리형이며 단지배치 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는 않음.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p>■ 마감재 및 발코니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설비배관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음.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욕실은 조립식 욕실로 시공됨.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 및 냉장고 콘센트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	사업주체	시공업체
양주옥정8BL(옥정8단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극동건설(주), 동일건설(주), ㈜태창토건
양주옥정16BL(옥정16단지)		대방건설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미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이상 여유공간 확보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주방	좌식 싱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고령자(65세이상), 3급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비디오폰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거실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야간센서 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동작감지기 설치(동작 On/Off 선택 가능)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의사항

-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1670-85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신청 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보훈보상 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래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

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외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6. 문의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주시청 및 양주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5.04.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별지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특징					
구 분		배점	확인내용	특점	배점기준
1.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20점)	1년 미만	12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양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양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년이상~5년 미만	14			
	5년이상~10년 미만	16			
	10년이상~15년 미만	18			
	15년 이상	20			
2. 신청자 연령 (20점)	만40세 미만	14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40세이상~만50세 미만	16			
	만50세이상~만60세 미만	18			
	만60세 이상	20			
3. 세대구성원수 (신청자포함) (20점)	1~2인	1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3인	16			
	4인	18			
	5인 이상	20			
4. 소득수준 (20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50% 이하	20			▶ 신청세대 월평균소득 기준 (50%: 1인은 70%, 2인은 60%) (70%: 1인은 90%, 2인은 80%)
	70% 이하	15			
<소득 기준(2025년도 기준)>					
		가구원수	150%	70%	50%
				(1인 90%, 2인 80%)	(1인 70%, 20인 60%)
		1인가구	5,720,045원 이하	3,432,027원 이하	2,669,354원 이하
		2인가구	8,799,405원 이하	4,693,016원 이하	3,531,762원 이하
		3인가구	12,252,644원 이하	5,717,900원 이하	4,084,215원 이하
4. 가점 (10~20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18 (유형 2가지)			
		16 (유형 1가지)			
		10			
	비수급자	10 (유형 하나 이상 해당)			▶ 위 유형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귀환국군포로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이주자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총점	점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input type="checkbox"/> 등본 <input type="checkbox"/> 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예비입주자 중복신청불가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증빙서류				

[별지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주거약자용 주택 적용)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 (5점)	10년 이상	5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양주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양주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3			
	1년 이상~ 5년 미만	2			
2. 신청자 연령 (3점)	75세 이상	3			▶ 공고일 현재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70세 이상~75세 미만	2			
	65세 이상~70세 미만	1			
3. 무주택세대구성 원수 (신청자 본인 포함) (2점)	2인 이상(신청자포함)	2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1인	1			
4. 장애등급 (3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5. 사회취약계층 해당여부 (중복 시 하나만 인정) (2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			
		총점		점	_____ 행정복지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input type="checkbox"/> 등본 <input type="checkbox"/> 초본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예비입주자 중복선정불가 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제공동의서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사실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주택 입주신청자용/자격검증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기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소, 거주시작일, 신청인과의 관계)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안내 및 관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호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이용안내**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다. 수집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3. 민감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나.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다. 민감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계약자는 영구**

라.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거부할 권리 : 민감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민감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등”에서 제외되고, 장애인 관련 배점 적용대상 및 편의시설 설치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선택]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여부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 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 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 (가입은행, 계좌번호,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정보, 계좌번호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소,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수]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5.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선·휴대전화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청약신청일로부터 신청자는 6개월, 당첨\(예비\)자는 5년](#)

라. 선택항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분양·임대주택의 청약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으나,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선택]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	--------------------------	-----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성 명		생년월일			
청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예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차주]	
<p>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p> <p>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p> <p style="padding-left: 20px;">*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p> <p>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p> <p>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p> <p>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p> <p>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p> <p>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p>						
<p>※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p> <p style="padding-left: 20px;">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 주택법 제106조(과태료)</p>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및 대기자 명부 제외사항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 내용

신청인 본인은 내가 공급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이하 동일)의 입주자 모집에 청약신청 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중 동일한 공급유형 내에서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의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 처리됨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처리 순서기준】

-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② 신청접수일, ③ 당첨자 발표일 중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

2.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시, 모든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처리 됨

【입주여부 판단기준】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일을 입주일로 판단

신청인 : (인)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1조(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각각을 말한다)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입주대기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10조(입주대기자 명부 관리) 제3항

공공주택사업자는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모든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해당 예비입주자를 제외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게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에 제외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